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61 발의연월일: 2024. 11. 27.

발 의 자:주진우·엄태영·우재준

곽규택 • 조배숙 • 박준태

유용원 • 서지영 • 유한홍

박성훈 · 정성국 · 백종헌

이성권 • 이헌승 • 김도읍

신동욱 · 김미애 · 이인선

박수영 • 조은희 • 김희정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 및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당선무효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반환·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되, 대통령선거의 정당후보추천자 등의 경우에는 추천 정당이 이를 반환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당 등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납부하도록 하며, 정당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 국고 등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도 그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추천 정당이 합당 등으로 없어져해당 정당에게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거나, 반환하여야 할 보전받은 선거비용에 대한 징수를 면탈하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정당의 재산을 은닉・탈루하려는 시도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이 국고에 반환하여야 하는 보전 선거비용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문제가 발생함.

이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세무서장에 게 압류를 위탁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하는 정당 등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징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재산에 대하여 징수를 면탈하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는 등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추천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하는 당선무효의 형이 선고된 후 그형이 확정되기 전에 추천 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경우에는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이 추천 정당이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의 반환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추천 정당이 분당되는 경우에는 신설하는 정당과 존속하는 정당이 연대하여 반환의무를 지도록 명시함

(안 제 259조의2, 제265조의2 및 제265조의3 등).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59조의2(보전된 선거비용 등의 반환을 위한 징수 면탈 등의 죄) ① 제26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보전된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하는 추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수를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265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제1항 본문 중 "제259조"를 "제259조, 제259조의2"로 한다.

제265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제1항 후단에 따라 추천 정당이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보전 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추천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에게 제4항에 따른 압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3장 제2절(제31조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하여 압류한다. 이 경우「정치자금법」 제27조의2에 따른 권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제26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5조의3(보전된 선거비용 등의 반환의무의 승계) ①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제26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추천 정당이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후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추천 정당이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경우에는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이 추천 정당이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의 반환의무를 승계한다.
 - ②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제26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추천 정당이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 여야 하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후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추천 정당이 분당되는 경우에는 신설하는 정당과 존속하는 정당(추천 정당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연대하여 추천 정당이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의 반환의무를 진다.

제267조제2항 중 "第259條(選擧犯罪煽動罪)의 犯罪"를 "제259조 및 제 259조의2의 범죄"로 한다.

제268조제1항 중 "이 法에 規定한 罪"를 "이 법에 규정한 죄(제259조의2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59조의2(보전된 선거비용 등의
	반환을 위한 징수 면탈 등의
	죄) ① 제265조의2제1항 후단
	에 따라 보전된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하는 추천 정당이
	나 그 정당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
	수를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
	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65조의2제3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압류물건
	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도 제1항과 같
	<u>다.</u>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정을 알
	고도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260조(양벌규정) ① 정당·회사,	제260조(양벌규정) ①
	그 밖의 법인 • 단체(이하 이 조	
	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의 대	
	표자, 그 대리인·사용인, 그 밖	
	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	
	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	
	여 제230조제1항부터 제4항까	
	지ㆍ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3	
	1조, 제232조제1항·제2항, 제2	
	35조, 제237조제1항·제5항, 제	
	240조제1항, 제241조제1항, 제2	
	44조, 제245조제2항, 제246조제	
	2항, 제247조제1항, 제248조제1	
	항, 제250조부터 제254조까지,	
	제25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56조,	
	제2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8조, <u>제259조</u> 의 어느 하나	<u>제259조, 제259조의2</u>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	
	형을 과(科)한다. 다만, 단체등	
	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	
	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	
	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생 략)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 ③ (생 략) 비용반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신 설>

④・⑤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비용반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제1 항 후단에 따라 추천 정당이 제 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 되기 전이라도 제1항에 따라 반 환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추천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에 게 제4항에 따른 압류를 위탁하고, 「국세징수법」 제3장제2절(제31조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하여 압류한다. 이경우 「정치자금법」 제27조의2에 따른 권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은압류할 수 없다.

<u>⑥</u>·<u>⑦</u> (현행 제4항 및 제5항

<신 설>

과 같음)

제265조의3(보전된 선거비용 등의 반환의무의 승계) ①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제26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추천 정당이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후 그형이 확정되기 전에 추천 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경우에는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이 추천 정당이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의 반환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제26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추천 정당이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보전받은 급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후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추천 정당이 분당되는 경우에는 신설하는 정당과 존속하는 정당(추천 정당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연대하여

第267條(起訴·判決에 관한 통지) ① (생 략)

- ② 第230條(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第235條(放送・新聞 등의 不法利用을 위한 買收罪) ·第237條(選擧의 自由妨害罪) 내지 第259條(選擧犯罪煽動罪) 의 犯罪에 대한 確定判決을 행한 裁判長은 그 判決書謄本을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한다.
- 第268條(公訴時效) ① <u>이 法에 規</u> 定한 罪의 公訴時效는 당해 選 擧日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 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完成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 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年으 로 한다.

②·③ (생 략)

	<u> 주천 정당이 반환하여야 하는</u>
	금액의 반환의무를 진다.
제	267조(기소・판결에 관한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59조 및 제259조의2의
	범죄
	
	<u>.</u>
제	268조(공소시효) ① 이 법에 규
	정한 죄(제259조의2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
	· ②·③ (현행과 같음)